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10. 16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수도시설과장 오응완)

□ 제안이유

- 법 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준비기준에 따라 「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·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「수도법」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(안 제2조)

- 「수도법」 제11조 → 제14조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5조 → 제24조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관내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디인지?· 중수도 시설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위브더가 5개, GS 백화점이 1개로 2개소에 6개 시설임.·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수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,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책무) ①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모든 시민은 중수도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 수돗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

제1호 중 ““수돗물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수돗물”이란”으로 하고, 제2

호 중 ““중수도”라 함은”을 ““중수도”란”으로 하며, 제3호 중

““중수”라 함은”을 ““중수”란”으로 하고, 제4호 중 ““중수도 처

리시설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중수처리시설”이란”으로 하며, 제5호 중 ““송·배수시설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송·배수시설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“이용설비”라 함은”을 ““이용설비”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개별 및 지구순환방식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”을 “「수도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설치대상) ① 중수도의 설치대상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.

② 시장은 수돗물 공급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관계없이 권장할 수 있다.

제6조(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) 중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할 수 있다.

1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별표 1의 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,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소지자
2. 「주택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
3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라 개인하수

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자

제7조제1항 중 “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다음 각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도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중수도 사용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사용계획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업개요서(별지 제2호서식)”를 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수도사업개요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중수도설치확인서(별지 제3호서식)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수도설치확인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5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1회이상”을 각각 “1회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부천시수도급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8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년도”를 “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”를 “제4항에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각호의 1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보수완료시”를 “보수완료 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4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]

중수도의 수질기준(제10조 관련)

구 분	수 세 식 변소용수	살수용수	조경용수	세차·청소 용 수
대장균군수	불검출 /100ml	불검출 /100ml	불검출 /100ml	불검출 /100ml
잔 류 염 소 (결 합)	0.2mg/l 이상일 것	0.2mg/l 이상일 것	-	0.2mg/l 이상일 것
외 관	이용자가 불쾌 감을 느끼지 아 니할 것			
탁 도	2NTU를 넘지 아니할 것	2NTU를 넘지 아니할 것	2NTU를 넘지 아니할 것	2NTU를 넘지 아니할 것
생 물 학 적 산소요구량 (BOD)	1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1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1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10mg/l를 넘지 아니할 것
냄 새	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			
pH	5.8 ~ 8.5	5.8 ~ 8.5	5.8 ~ 8.5	5.8 ~ 8.5
색 도	20도를 넘지 아니할 것	-	-	20도를 넘지 아니할 것
화 학 적 산소요구량 (COD, Mn기준)	2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2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2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20mg/l를 넘지 아니할 것

비고

1. 총대장균군, 잔류염소, 탁도, 냄새는 먹는물 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.
2. 생물학적 산소요구량, pH, 색도,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오염 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중수도사업개요서



부천시장 귀하		년 월 일		
		건축주 주소 성명 (인) (전화) -		
「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 설치에 따른 중수도사업 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				
1. 건축장소	부천시 구 동 번지			
2. 기 공 자	주소 성명 (인) (전화)			
3. 건축물 개요	3. 건축물 명칭	5. 연 면 적	m ³	
	4. 주요 용도	6. 금수관경	m/m	
	7. 공사예정일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8. 중수 사용량	m ³ /d		
9. 원수	종 별	오수, 잡배수, 기타	10. 증수 수	
	수 량	오수		m ³ /d
		잡배수		m ³ /d
		기타		m ³ /d
	용 도			
	시설용량	m ³ /d		
	시설면적	m ³		
	설치위치	지상 층·지하 층		
11. 처리 시설 개요	처리시설의 공정구성을 기입(첨부)			
※ 승인번호		※ 수입증지란	※ 비 고	

[별지 제3호서식]

중수도 설치 확인서

년 월 일

부 천 시 장

「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제출된 중수도 관련 도서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중수도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1. 건축물 명칭 및 주소	
2. 건축물 주소	
3. 중수도 사용계획서 승인번호	
4. 중수도 사업개요서 승인번호	
5. 중수도 시설현황	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94호
의결 년월일	2009. 11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0. 5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「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·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수도법」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2조)
 - 「수도법」 제11조 → 제14조
 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5조 → 제24조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수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,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책무) ①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모든 시민은 중수도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 수돗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제1호 중 ““수돗물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수돗물”이란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“중수도”라 함은”을 ““중수도”란”으로 하며, 제3호 중

“중수”라 함은 “중수란”으로 하고, 제4호 중 “중수도 처리시설”이라 함은 “중수처리시설”이란으로 하며, 제5호 중 “송·배수시설”이라 함은 “송·배수시설”이란으로 하고, “이용설비”라 함은 “이용설비”란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개별 및 지구순환방식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”을 “「수도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설치대상) ① 중수도의 설치대상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.

② 시장은 수돗물 공급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관계없이 권장할 수 있다.

제6조(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) 중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할 수 있다.

1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별표 1의 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,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소지자
2. 「주택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

3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라 개인하수
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자

제7조제1항 중 “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다음 각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도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중수도 사용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사용계획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업개요서(별지 제2호서식)”를 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수도사업개요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중수도설치확인서(별지 제3호서식)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수도설치확인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5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1회이상”을 각각 “1회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부천시수도급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8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년도”를 “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”를 “제4항에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각호의 1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보수완료시”를 “보수완료 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4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]

중수도의 수질기준(제10조 관련)

구 분	수 세 식 변소용수	살수용수	조경용수	세차·청소 용 수
대장균군수	불검출 /100ml	불검출 /100ml	불검출 /100ml	불검출 /100ml
잔 류 염 소 (결 합)	0.2mg/l 이상일 것	0.2mg/l 이상일 것	-	0.2mg/l 이상일 것
외 관	이용자가 불쾌 감을 느끼지 아 니할 것			
탁 도	2NTU를 넘지 아니할 것	2NTU를 넘지 아니할 것	2NTU를 넘지 아니할 것	2NTU를 넘지 아니할 것
생 물 학 적 산소요구량 (BOD)	1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1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1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10mg/l를 넘지 아니할 것
냄 새	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			
pH	5.8 ~ 8.5	5.8 ~ 8.5	5.8 ~ 8.5	5.8 ~ 8.5
색 도	20도를 넘지 아니할 것	-	-	20도를 넘지 아니할 것
화 학 적 산소요구량 (COD, Mn기준)	2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2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20mg/l를 넘지 아니할 것	20mg/l를 넘지 아니할 것

비고

1. 총대장균군, 잔류염소, 탁도, 냄새는 먹는물 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.
2. 생물학적 산소요구량, pH, 색도,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오염 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중수도의 사용계획서

부천시장 귀하					
년 월 일 건축주 주소 성명 (인) (전화) -					
「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					
1. 건축장소	부천시 구 동 번지				
2. 설계자	주소 성명 (인) (전화)				
3. 건 축 물 개 요	건축물 명칭		부지면적	m ³	
	주요 용도		건축면적	m ³	
	층 수	지상 층 · 지하 층	연 면 적	m ³	
	구 조		공사종별	신축 · 증축 · 용도변경	
4. 공사예정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5. 수 도 사 용 계 획	일최대사용량		6. 중 수 사 용 계 획	중수도 시설용량	
	급수관 구경			일최대사용량	
	년간총사용량			년간중수사용량	
	기 타			사 용 용 도	
※ 지시사항					
※ 승인번호		※ 수입증지란		※ 비 고	

[별지 제2호서식]

중수도사업개요서



부천시장 귀하		년 월 일		
		건축주 주소 성명 (인) (전화) -		
「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 설치에 따른 중수도사업 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				
1. 건축장소	부천시 구 동 번지			
2. 기 공 자	주소 성명 (인) (전화)			
3. 건축물 개요	3. 건축물 명칭	5. 연 면 적	m ³	
	4. 주요 용도	6. 금수관경	m/m	
	7. 공사예정일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8. 중수 사용량	m ³ /d		
9. 원수 수	종 별	오수, 잡배수, 기타	10. 증수 수	
	수 량	오수		m ³ /d
		잡배수		m ³ /d
		기타		m ³ /d
	용 도			
	시설용량		m ³ /d	
	시설면적		m ³	
	설치위치	지상 층·지하 층		
11. 처리 시설 개요	처리시설의 공정구성을 기입(첨부)			
※ 승인번호		※ 수입증지란		
		※ 비 고		

[별지 제3호서식]

중수도 설치 확인서

년 월 일

부 천 시 장

「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제출된 중수도 관련 도서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중수도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1. 건축물 명칭 및 주소	
2. 건축물 주소	
3. 중수도 사용계획서 승인번호	
4. 중수도 사업개요서 승인번호	
5. 중수도 시설현황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	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수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,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의 규정</u>에 의하여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, 그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 「<u>수도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 (책무)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기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책무) ①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모든 시민은 중수도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 수돗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제3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“<u>수돗물</u>”이라 함은 시장이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.</p>	<p>제 3 조 (정 의) -----뜻 은----- <u>각 호</u>-----. 1. “<u>수돗물</u>”이란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2. “중수도”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,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, 송·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.</p>	<p>2. “중수도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3. “중수”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,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.</p>	<p>3. “중수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4. “중수처리시설”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.</p>	<p>4. “중수처리시설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5. “송·배수시설”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·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.</p>	<p>5. “송·배수시설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6. “이용설비”라 함은 저수조, 수세식변기, 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 총체를 말한다.</p>	<p>6. “이용설비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 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개별 및 지구순환방식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공업용수의 이용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업용수 사업관리자가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</p>	<p>제4조(적용범위) ----- 「수도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----- ----- 따른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 (설치대상)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철도역사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4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·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5.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	<p>제5조(설치대상) ① 중수도의 설치대상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수돗물 공급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관계없이 권장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 (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)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중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, 토목·건축공사업,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 2.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3.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설계·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 	<p>제6조(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)중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별표 1의 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, 토목·건축공사업,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소지자 2. 「주택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 3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1조 제1항의 별표 4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자
<p>제7조 (설치신고 및 확인)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관리인 등(이하 “사업자 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수도 사용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 2. 처리시설의 위치, 용량, 사업비,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(별지 제2호서식) 	<p>제7조(설치신고 및 확인) ① 제5조제1항에 ----- -----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도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사용계획서 2. ----- -----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수도사업개요서

현행	개정안
<p>3.·4. (생략)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는 중수도설치확인서(별지 제3호서식)를 교부한다.</p> <p>③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등에게는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④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기타 관련사항</p> <p>⑤기존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⑥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서를 제출받은 경우, 중수도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는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수도설치확인서-----.</p> <p>③ ----- -----해당-----</p> <p>④ -----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에 -----</p> <p>⑤ ----- -----제1항에 따른-----.</p> <p>⑥ ----- 제5항에 따른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⑦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</p>	<p>⑦ ----- 제3항에 따라 -----.</p>
<p>⑧ (생략)</p>	<p>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 (관리) ① (생략)</p>	<p>제8조(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각호 -----.</p>
<p>②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등은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1. (현행과 같음) 2.----- 그 밖에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3. ·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송·배수시설은 수도, 전기,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수질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</p>
<p>3. · 4. (생략)</p>	<p>-----</p>
<p>제11조 (수질검사) ① (생략)</p>	<p>-----1회 이상-----</p>
<p>②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 농도, 냄새, 탁도, 외관 및 잔류 염소에 대하여는 매일 1회이상,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으로 한다.</p>	<p>----- 1회 이상-----.</p>
<p>③·④ (생략)</p>	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요금감면) ①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등이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</p>	<p>제12조(요금감면) ①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8조제2항에 따라 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-----해당-----.</p>
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③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<u>각 호</u> .</p>
<p>1. ~ 4.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<u>년도</u>를 포함한 1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	<p>④ ----- -----<u>년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 중수사용량은 월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계량기에 <u>의하여</u>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<u>따라</u> -----.</p>
<p>⑥ (생략)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⑦ 시장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u>제4항의</u> 규정에 관계없이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⑦ ----- ----- <u>제 4 항 에</u> -----.</p>
<p>제13조 (사용수량 인정) 시장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3조(사용수량 인정) ----- <u>각 호의</u> <u>어느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· 2. (생략)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 (수량계량기 설치) ① 수량계량기는 사업자등이 설치하여야 하며, <u>보수완료시</u>에는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14조(수량계량기 설치) ① ----- ----- <u>보수완료 시</u>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 (과태료) 시장은 사기,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및 부정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<u>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</u>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.</p>	<p>제 1 5 조 (과 태 료) ----- ----- ----- --- 「<u>부천시 수도급수 조례</u>」 <u>제44조에 따라</u>----- -----.</p>
<p>제1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7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</u> <u>에</u> ----- -----.</p>

〈관계 법령발췌서〉

○ 수도법

제14조 (중수도의 설치)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(증축·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 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
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
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

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 수량,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수 배출량의 산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.

④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.

○ 수도법 시행령

제24조 (중수도의 설치 대상 등) ①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"이란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철도역사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
6.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

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.

○ 수도법 시행규칙

제2조 (중수도 설치통보 서식) 「수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결과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제3조 (중수도 시설기준)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

어야 한다.

1.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·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·여과지·소독설비 등의 재처리시설
2. 필요한 양의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·송수관 등의 송수시설
3.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

②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과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·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 (중수도의 수질기준) 중수도를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1의 기준에 맞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 (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)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은 수량과 「지하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
2.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

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수 배출량은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3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은 제외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7.12.28>